
2019년도 국민·공무원 제안 공개 모집 계획

2019. 7.



I 개요

- 추진목적 : 국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제도 운영에 반영하여 국민참여의 활성화, 행정서비스 능률화·경제화 촉진을 통한 혁신도모
- 추진근거 :
 - 「국민 제안 규정」 및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
 - 「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」
 - 『2019년도 국민·공무원 제안 운영 계획』 (경기도교육청)

II 운영계획

1. 국민·공무원 제안 공개 모집

- 응모분야
 - 미래교육 기반 조성 방안
 - 학교민주주의 정착 방안
 - 학교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방안
 - 예산절감 및 예산효율화 방안
 - 경기교육 행정제도 및 절차개선 등에 관한 사항
 - 기타 경기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
- 응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,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
- 응모기간 : 2019.7.22. ~ 7.31.
- 응모방법 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
 - 국민제안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eople.go.kr/jsp/user/UserMain.jsp>) → 제안 → 공모제안 → (기관선택)경기도교육청 검색 → [경기도교육청] 2019년도 국민·공무원 제안 공개 모집 선택 → 응모하기
 - 공무원제안 : 국민신문고(<https://www.epeople.go.kr:8055/jsp/AdminLogin.jsp>) → 공무원제안등록 → (제안형태) 공모제안 선택 → 제안 작성

2. 국민·공무원 제안 심사

- 심사절차



□ 심사기준

-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심사항목 동일
- (소관부서) 심사점수 합계가 **70점 이상일 경우 채택**

〈국민·공무원 제안 심사항목별 배점기준〉

심사항목(배점)	심사 기준
실시 가능성(20)	• 현실여건(상황)을 고려할 때, 실제 실시(적용) 가능한가?
창의성(20)	•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? •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, 전부 모방하였는가?
효율성 및 효과성(20)	•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?
적용 범위(20)	• 전 행정기관(중앙.지방)에 적용할 수 있는가? • 일부 행정기관.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? •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?
계속성(20)	•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? •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?

□ 심사제외 대상

-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, 「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
-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
-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-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
-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·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-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-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(민원)

III 포상계획

1. 국민·공무원 우수제안자 포상

□ 창안등급 부여 제안자

-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창안등급 결정(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등급 미부여)
 - 창안등급 부여 제안자에게 교육감 표창 수여, 등급별 부상금 지급
- ※ 표창근거 : 「경기도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」 제7조

〈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및 창안등급별 부상금〉

창안등급	심사위원 평균 점수	부상금
특별상	95점 이상	200만원
우수상	90점 이상	100만원
우량상	85점 이상	50만원
장려상	80점 이상	20만원
등급 미부여	80점 미만	없음

-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등급 부여 채택제안 중 자체우수제안 선정, 행정안전부로 자체우수제안 추천
 - ※ 자체우수제안 추천기관 :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군·구, 시·도 교육청
 - 행정안전부에서 추천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사전조사, 예비심사, 국민평가, 자체점검, 종합심사를 통해 중앙우수제안 결정
 -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 중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, 시행되어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 제안자에게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의 인사 특전 부여 가능
 - ※ 근거 :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 제18조, 「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」 제12조
- 〈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자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〉

창안등급	인사 특전의 종류	인사 특전 대상자 구분
금상 · 은상 · 동상	특별승진	·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· 교육공무원
	특별승급	· 특별승진을 실시하기 곤란한 교육공무원
장려상	특별승급	· 경력직공무원 · 특수경력직공무원

[출처 :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 별표 1]

- 2명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 주제안자는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하고, 부제안자는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특별승급 대상자로 함
 -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 인사 특전 미부여
 - 특별승진 대상자에 해당하나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(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, 상위직급 결원 부족 등)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 부여 가능
- 창안등급 미부여 제안자(채택제안자)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상품권 지급

□ 2019년도 제안왕

- 국민·공무원 제안접수 건수, 채택실적, 창안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, 최고 점을 획득한 제안자를 '제왕왕'으로 선발(1명)

<국민·공무원 제안왕 평가항목별 배점표>

평가항목		배점
접수건별	1~3건	10점
	4~6건	20점
	7~9건	30점
	10건 이상	40점
부서채택		1건당 10점
창안등급별	장려상	20점
	우량상	30점
	우수상	40점
	특별상	50점

※ 동점자 처리 : 제안건수, 부서제안채택률, 창안등급 순

- 다수의 제안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2년 연속 제안왕 수상 불가 (차 순위자에게 수여)
- 창안등급 부여 제안자와 중복 포상 가능
- 제안왕에게 교육감 표창 수여 및 부상금(10만원) 지급

2. 제안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

□ 교육훈련시간 인정

<공무원제안 관련 지방공무원 개인학습 인정시간 기준>

교육·학습유형		인정시간	최대 인정시간	인정근거
제안 (제안규정에 의한 입상)	입상 (대내.외)	건당 10시간 (대외입상 10시간 추가)	50시간	결과 확인 공문

※ 근거 :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(2019.1.)

□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

<공무원제안 관련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지표>

구분	대상	내용	배점
개인가점	전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무원 제안 - 제안심사위원회의 창안등급 결정 1건 이상 	1

※ 근거 : 2019년 성과평가 기본계획(2019.3.)

□ 제안 채택자·실시자 포상

- 채택·실시에 기여한 본청 소관부서 제안처리담당자에 대해 포상하여 적극 심사자세 격려, 제도개선의 동기 부여
- 채택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창안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본청 소관부서의 채택자·실시자에게 교육감 표창 수여
- 우수·다수 제안 채택자를 행정안전부 제안 활성화 유공자로 추천 가능 (선정된 유공자에게 국무총리 또는 장관 표창 수여, 상금 지급)
- 본청 소관부서의 채택제안 처리담당자에게 상품 지급

IV 행정사항

1. 홍보 강화(전 기관)

-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문 게시
-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및 홈페이지 알림창 게시 등 홍보 협조

2. 심사부서 협조 사항(본청 각 부서)

□ 제안 처리담당자 지정

- 제안부서담당자는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제안처리담당자 지정
- 지정된 부서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닐 경우, 사유 및 해당부서를 명시하여 즉시 부서 재지정 요청

※ 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, 사유 및 해당 기관을 명시하여 부서 재지정 요청

□ 제안 처리기한 및 심사가준 준수

○ 공모제안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심사 완료

※ 일반제안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심사 완료

- 채택심사 시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른 채택 여부의 면밀한 검토

□ 제안 검토의견의 신중한 작성 및 회신

- 부서장 책임 하에 불채택 결정 시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통보
- 지나치게 짧은 단답식 답변 지양, 불채택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

□ 정책반영 노력 강화

- 제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·보완 후 정책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제안자에게 보완 요구 가능

※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제안의 숙성(보완, 개선) 가능

- 실현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채택·실시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협조

□ 채택제안 의무 실시

-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고,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 실시
-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